

'94行政事務監査 指摘事項 處理顛末調書

■시정요구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하여 유선비, 이전비, 신규가입비 부당징수로 민원발생에도 형식적 단속과 무분별한 케이블이 전기선 등과 합선의 우려 주민불편 조치요망	○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감독 체계 확립 • 지도감독반 설치운영 : 94. 12. 10 [반장 : 문화공보실장 반원 : 공보계장의 2명 ○ 방문 지도감독 실시 : 년1회 ○ 민원발생시 : 수시 ○ 내 용 [유선비, 이전비, 신규가입비 징수관련 민원 무분별한 케이블 설치로 합선 등 주민 불편 행위 등 ○ 위반사항 처리 [1차 : 시정 2차 : 경고 3차 : 의법 조치	문화공보실
○ 중계유선방송사에서 구인광고 등을 방송하면서 편집비 명목등으로 법규정상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도 징수 민원 발생	○ 불법 부당한 사례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설치장소 : 문화공보실(전화 200-8221) ○ 처리절차 • 신고→접수→사실확인→조치 ○ 위반사항 처리 [1차 : 시정 2차 : 경고 3차 : 의법조치 ○ 법규 미비사항 처리절차 • 공보처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의회 동의 절차 무시 — 각종 사업계획등으로 취득, 처분, 무상사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득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하단동 어린이집, 신평레포츠 공원 관리실 등을 신·증축하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였음.	○ 공유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단 어린이집, 신평레포츠 공원관리실 등은 이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 무 과
□ 민영주차장 관리 일부 민영주차장에 있어 주차장 표시판, 이용안내 및 위치안내 표지판, 콘크리트 바닥 포장 등 신고수리시 승인된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주차요금 또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 '94. 12. 28~12. 31, 3일간 관내 61개 민영주차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39개 주차장(주차선 퇴색 32개소, 표지판 파손 3개소, 요금표지판 훼손 및 미기재 19개소)에 대하여 경고, 시정토록 조치하고 ○ '95. 1. 23 민영주차장 대표자 간담회(10부제 미참여 차량의 할증요금 징수를 위한 관리 규정 변경신고 추진)시 규정요금 및 관리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하였으며, 추후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지역교통과
□ 마을버스 운행 감천고개~삼성여고간 운행인가된 감천2동 마을버스(우성버스)는 현행 노선구간을 운행치 않고 감천삼거리까지 단축 운행하여 이용주민 불편 초래	감천2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감천고개~감천1파출소까지 운행하던 것을 감천로 확장공사 완공과 더불어 삼성여고까지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관내 일부 부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 및 소매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구평동 220번지(임 재 운) - 건축 58550-1455('94. 4. 9)주차장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시정기한 '94. 4. 30) - 건축58550-1896('94. 5. 4) 시정촉구('94. 5. 21) - 건축58550-2340('94. 5. 28) 시정독촉('94. 6. 10한) - 건축58550-2945('94. 7. 4)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방법 통보('94. 7. 9한) - '94. 7. 13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계획서 제출 - 건축58550-3260('94. 7. 21)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촉구('94. 7. 30한) - 건축58550-4865('94. 10. 18)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건축주 고발 - 건축58551-36('95. 1. 5)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구평동 365-1번지(손 영 준) - 건축58550-1455('94. 4. 9) 주차장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건축58550-1896('94. 5. 4) 시정촉구 - 건축58550-2340('94. 5. 28) 시정독촉 - 시정완료 보고('94. 5. 27) - 건축58550-2945('94. 7. 4)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시정 방법 통보 - 건축58550-4869('94. 10. 18) 부설주차장 재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건축58550-5621('94. 12. 3) 시정독촉 - 건축58550-5922('94. 12. 23) 위반건축주 고발 - 건축58551-36('95. 1. 5)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건 축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하단광로 및 신평·장림공단 주변 등 주유소 업소를 비롯한 보차도 점용 자가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위반, 조 잡하게 시공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점 용면적도 허가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보차도 점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시설물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허가면적 초과 점유자는 점용료를 소급 추정하겠음. * 기 간 : 95. 1. 18-2. 28 * 대 상 { 허가 610개소 무단설치 사용 보차도	건 설 과
계획선과 시공선의 불일치로 현재까 지 도시계획 미준공 처리된 17개 사 업장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 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	○ 대 상 : 다대로 확장공사의 16건 ○ 준공처리기간 : '94. 11-'95. 8 ○ 조치계획 : - 확정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분할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지적도면 및 측량성 과도 사본을 첨부하여 실시 계획인가기간 변경과 동시 준공 - 확정분할측량이 미시행된 사 업장에 대하여도 확정측량의 뢰 및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기간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선행후 도시계획 사업 준공신청	
동양레미콘 진입 감천1호교 교량 난 간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초래	○ 개 요 : 난간보수 L=119m의 7개 공종 ○ 기 간 : '94. 12. 29-'95. 2. 17 ○ 사업비 : ₩34,000천원 ○ 추진사항 : 기존난간 철거작업중	
하단2동 65호 광장 진입 인도구간 철망설치로 주민통행 저해	하단2동 65호 광장에서 강변도로측의 펜스설치 부분은 시공당시 녹지대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지반을 낮추어 잔디가 식재된 상태로서 인도개설 계획이 없음.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울숙도 파출소 앞 도로상에 파손된 중앙분리 콘크리트 시설물이 방치되 어 차량사고 위험	○ 교통시설물 건설 58000-1462 ('94. 4. 22) 호로 사하경찰서에 철거 요청하여 ○ 사하경찰서 교통 63350-1409 ('94. 5. 12) 호로 철거 정비회시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 아 ○ 건설 58000-8357 ('94. 12. 10)호로 경찰 청에 정비요청 하였음.	건 설 과
하구둑 진입 굴다리 주변 맨홀파손, 불량펜스 설치 방치 및 육교도색 노 후화 도심미관 저해	○ 공사완료 - 공사기간 : 12. 29-1. 17 - 공 사 비 : 6,100천원	
고장가로등 방치, 가로등 소등시간 상이	○ 강변대로 자동점멸기 시간조정하여 동시시 간 대에 소등될 수 있도록 조치 ○ 야간순찰 확행하여 고장가로등 신속히 보 수	

'94行政事務監査 指摘事項 處理顛末調書

■ 처 리 요 구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서울신문을 예산으로 871부를 구입하고 있으나 보급소에서 제때에 배달되지 않아 국정 홍보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배부대상이 적절치 못함.	○ 신속배달 : 95. 1. 10 • 촉구 ┌ 서울신문사 부산지사 └ 사하구 4개 보급소 (괴정, 하단, 신평, 다대보급소) • 동 배달 확인서 발급철회 지시 : 95. 1. 10 ○ '95 구독자 대상자 변경 가.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중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자(95%) : 827부 나. 구독희망 저소득층(2%) : 18부 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자 중 구독 희망자(3%) : 26부 ○ 확정 서울신문사 통보 : '95. 1. 20	문화공보실
○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과 반회보를 알기 쉽고, 읽기 쉽도록 제작하도록 하고 반회보가 각 가정에 배부되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효율적인 배부 방안 강구	I.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1. 주민 자율참여 기반조성 가. 개최단위 조정 ○ 생활권, 사업장 단위의 공동이해 권역별로 개최 ○ 기업주와 공장주변 지역주민과의 현지반상회 개최 나. 합동반상회 개최 ○ 동사무소 회의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개방하여 공동반상회 개최 다. 유관기관, 단체참여 협조공문 발송 ○ 발송시기 : 분기 1회	총 무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대 상 :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전문인사 등 ○ 내 용 : 소속 임직원 참석 협조 라. 반상회 개최 홍보 ○ 홍보시기 : 반상회 개최 12일전 ○ 홍보방법 : 유선방송 자막홍보, 동영 프 등 활용 2. 반상회 운영 내실화 가. 건의사항 적극 해결 ○ 전달체계 확립 — 건의사항 처리점검부 분기 1회 점검 — 자체처리 불가사항 관련기관 통 보 ○ 건의사항 처리 제도화 —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처리 ○ 처리결과 회시 — 10일이내 처리원칙(단 불가시 중 간 및 최종결과 통보) 나. 전문인사 참석 생활지혜 제공 ○ 대 상 :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 사자 ○ 주요활동 : 건강상식 등 분야별 전문 지식 제공 II. 흥미있는 반회보 제작 1. 반회보 편집개선 ○ 퀴즈풀이, 독자문예 등 구민참여 지면 확대	총 무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생활지혜, 미담사례, 건강상식 등 구민 관심사항 우선 게재 ○ 주요건의, 숙원사업 처리결과란 설정 운영 등 ○ 쉬운 용어, 다양한 삽화 등 활용 관심 제고 나. 모범 통·반장 사기 진작 ○ 반상회 유공자 표창 - 시 기: 분기 1회 - 대 상: 모범 통·반장 등 - 내. 용: 모범 통·반장 격려, 애로사항 청취 등	총 무 과
○ 건강한 국토사업중 괴정3동 싸리골 정비공사, 당리동 마하골 복개도로정비 공사등 5건의 사업장을 선정하면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계획성없이 사업장을 선정하여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강구 ○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실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선정	○ 생활환경과 터전을 풍요롭게 가꿈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시행한 '94 건강한 국토사업은 • 총 23건의 사업장중에서 5건의 사업장이 주변환경변화 및 보상문제가 수반되어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사업장을 재선정, 시공하는 시행상의 문제도 있었으나 •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따라서 '95년도에는 •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직접 수혜가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사업장선정시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한편 - 동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서의 타당성 검토등을 거쳐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하단오거리~오양주유소간 보도정비등 총 17개 사업(구1, 동16), 사업비 846,400천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 현장위주 주민의견 수렴후 설계, 부 실시공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지역주민, 단체 등을 명예감독관 및 사후관리단체로 지정하여 ○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 무 과
○ 괴정3동 새마을문고 시설설치('94. 7월)후 현재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등 대부분 문고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되도록 하고 여타 문고도 활성화되도록 대책 강구	○ 괴정3동 새마을문고는 •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의 창달 및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문고설치비 5,000천원을 지원하여 20조, 책상40개, 의자80개를 비치하여 • '94. 12. 13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급단체원 70명이 참석하여 문고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괴정3동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는 • 문고개관후 업무시간후 동직원 1명과 각 급단체원이 1일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평일 17:00~23:00, 토요일 14:00~23:00, 일요일 10:00~23:00까지 운영) • '95. 1월중에 동정자문위원 등 지역유지 20명으로 문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자 채용, 이용홍보 등 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또한 다대1동 새마을문고를 비롯한 7개 문고에서는 • 문고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 지역단위 소도서관 및 어린이공부방 등 시민정신운동의 구심체 문고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무 과
○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를 저조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이 '92년도 47%, 93년도 36%, '94년도 34%로 극히 저조한 실적임에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미흡	○ 이미 발생한 체납에 대하여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고(별첨) ○ '95년부터는 고지서 전달과 납기내 징수를 강화하여 체납발생을 줄이겠습니다.	재 무 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에 계획서 요약

1. 체납변상금 징수목표액

체납금액		'95 징수목표액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938	1,103,209	530(18%)	220,000(20%)	

2. 추진계획

구분	내용	기한	비고
가. 체납부작성 시달	○ 2부작성-1부 동시달하여 동장 책임하에 주1회 독려, 1부구 보관	2.28일까지	
나. 독촉장 발송	○ 체납자에게 고지서 송부-2,938건	3.31일까지	
다. 체납자 재산 압류	○ 반송독촉장 재교부-담당구역 지정 책임교부 ○ 단계별 실시 ├ 1단계(2,500천원 체납자) - 146건 ├ 2단계(3회이상 고질 3체납자) ├ 3단계(1,000천원-2,500천원) └ 4단계(500천원 이상)	4.30일까지 3.31일까지 4.30일까지 5. 1~6.30 11월까지	
라. 홍보실시	○ 유선방송자막실시 - 분기 1회 ○ 구민원실 전광판 홍보-연 3회 ○ 반상회보 게재-분기 1회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 생활행정정보실을 '9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방법 등을 몰라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임에도 홍보태세가 미흡하니 이용코드집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생활행정정보실은 구정현황, 동의 유래등 28종 288항목이 입력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전화(292-0800)를 누르시면 연결되어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번호가 송출되고 원하는 번호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르면 안내음성이 자동 송출됩니다. ○ '94년도에는 이용안내 홍보물 30,000매, 스티카 1,000매를 제작 각 실과에 배부하고 각동에는 민원실 비치 및 자생단체장에게 배부하여 민원인들에게 홍보하여 민원안내 6,438건, 민원접수 89건의 이용실적이 있었으나, 민원인들이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함으로	시민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이에 대한 방안으로 '95년도에는 생활행정 정보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코드집,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 각실 과 및 전동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 생활 행정정보실 운영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민편의 행정에 가일층 노력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의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시 민 과
□ 전명 :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시설 관리소홀 ○ 내용 : '93년도 예산(8백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시설로 설치한 괴정 4동 550-10번지 (삼익 아파트) 개방시설의 급수가 중단('94. 10월)되었음에도 이를 방치	□조치사항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시설 정비보수 완료 — 양수장 건물내에 설치된 양수펌프 흡입 후드 밸브고장 수리조치('94. 10. 28) ○정기점검 체계확립 관리자 지정 — 정기점검 실시 ┌ 구 : 매 분기 1회 실시 └ 동 — 동장 : 월1회 — 민방위담당자 : 주1회 — 관리책임자 지정 ┌ 정 = 동장 └ 부 = 민방위담당자	민방위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다대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영세민 자녀를 위한 무료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되도록 대책 강구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 ○ 생활보호대상자(거택, 자활)와 구청장이 면제하도록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료를 전액 면제 ○ 현 다대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적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은 없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 프로그램을 진단하여 많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사 회 과
○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후 사후관리 미흡 • 사후관리(계속근무, 전직, 퇴직 등) 대책강구 • 2개뿐인 취업정보센터 입간판 확충필요	○ '95년도 노정업무기본계획 수립시(1월중) 사후관리 계획 포함 수립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95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2-3개 설치예산을 추가요청 설치하여 홍보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세차장의 유수분리기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그대로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있음에도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	1. 폐수 방류시간대 조정 운영 — 내용 : 폐수 방류시간대를 정하여 폐수 방류토록 유도 — 방법 : 방류시간대를 신고후 방류토록 하여, 무단 방류 차단 2. 노후 방지시설 개선 유도 — 내용 :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업소 개선명령 — 방법 : 폐수 방지시설 단계 강화(PH조정 - 유수분리 - 침전 - 방류)	환경보호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3. 방지시설 가동 확인기기 부착 권장 - 내용 : 가동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토록 권장 4.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유도 - '96년부터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안내 5. 폐수 방류 상태 시민의 자율감시 참여유도 - 폐수처리후 방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배출구를 개방 6. 세차장 지도점검 강화 -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단속 실시	환경보호과
- 장림동 폐유소각장, 동산유지, 대 한제강 등 집진시설 등이 불량하여 대기오염은 물론 악취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대기오염 배출업소 단속 철저)	1.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관할기관에 통보 - 관할기관 : 부산광역시 환경보호과에 조치 건의('94. 12. 8) 2. 장기적으로 배출업소 관리를 일원화 건의 3.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성	
○ 쓰레기 중간집하 장소가 부적정하여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많으므로 조치 요망	○ 적환장 작업시간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조치 - '94조치사항 : 낮시간→18:00이후 설치 조치 - '95조치계획 : 청소차에 직접 이적토록 추진→적환장의 점진적 철거	청 소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장림2동의 경우 소각로 가동시 발생하는 냄새, 배출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	○ 소각로 연돌의 높이를 2단 더 증설하여 높이를 높임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2차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95. 1. 14자 공사 완료	청 소 과
○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 미흡 관내 다량배출업소 193개소 중 자체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 중 일부업소가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 단속활동을 강화→불법소각 행위 엄격단속 - 기계식 소각로 설치 권장(안내문 전달 등) - 분기 1회 점검 실시	
○ 자율감시원 등 일부요원이 고유의 임무수행 중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으며, 업주 등과 마찰이 있음에도 부적격자를 해촉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지도 또한 소홀한 실정임 (각종 모니터 요원 부적격자 교체)	○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정비 - 교육실시 및 1차 정비(당초 301명→95명)-'94. 4. 29 - 활동력 있는 청년회원 12명 추가 위촉-'94. 9. 26 - 정비계획: '95년 1/4분기중 50명으로 축소 정예화, 지원확대	환경보호과
○ 부정불량식품 신고 모니터 요원 ○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 무단투기 자율감시원 등 일부요원이 고유의 임무수행 중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으며 업주 등과 마찰이 있음에도 부적격자를 해촉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지도 또한 소홀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부적격 요원은 즉시 교체	○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 신고 모니터 일제점검 실시 - 일 시: 1995. 1. 6 - 대 상: 신고모니터 요원 60명(94. 5. 26 위촉) - 점검자: 식품위생계의 담당부서 직원 3명 - 점검결과 부적격자: 12명 적발 부적격내용: 사직3, 해임6, 교체3 등으로 미활동 - 조치사항: 1995. 1. 9. 12명 해촉	위 생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금후조치 - '95년도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고모니터 요원 활성화 계획에 의거 95년 2월중 별도 위생교육 실시 계획으로 있음	위 생 과
○ 각종 모니터 요원이 고유의 임무 수행중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으며 업주 등과 마찰이 있음에도 부적격자를 해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업소 방문시 요원중 패용하고 가격동향 수집기능의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토록 수시 교육하였으며 부적격요원은 없음. ※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	지역경제과
○ 감천항 배후도로 가로수 관리 소홀	○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 통보하여 흉고6 이상 교목으로 대체 식재토록 조치 ○ 우리 구 녹지순찰 실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구직영 양묘장 가로수 관리 미흡	○ 초화수목을 전담관리 할 수 있는 인력보강 (기능직 1명) ○ 고사목 및 낙엽소각은 일정한 장소에서 수목피해 없도록 조치 ○ 급수 및 복토 등 비배관리 철저히 하여 수목성장 촉진	
□ 주차선 설치 관내 주차선 설치 현황 및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도면 등으로 관리카드를 작성, 부설시공에 대하여 하자보수 이행 등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대상 취약지 등도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축성있게 선정하여야 하나 불필요한 설치로 예산낭비 초래	○ 신규 주차선(금지 또는 허용) 설치는 경찰서 및 관할 동사무소 등 의견 협의후 교통소통 지장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지역에만 설치하고 있으며, ○ 관내 이면도로는 459개 노선 131.57km가 되며 설치부서가 경찰서, 도로사업소, 건설과, 지역교통과 등 다양하여 설치년도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는 기술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실용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금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지역교통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교통시설물 설치 보차도 분리공사의 경계석 설치에 있어 곡각지점 및 차고지 차량 진입 등 현지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괴정천 일부 구간에는 지표면에 낮게 시공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특히 곡각지점에는 차량통행을 저해하고 있음	○ 차고지 등 차량 출입구에 지면에서 높이 20cm로 설치한 일반 경계석보다 낮게 (지면에서 3~5cm) 설치한 부분은 보도와 차도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가격이 저렴하고 높이가 낮은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타구에도 낮은 부분이 설치되어 있음 - 일반경계석(L=100cm, B=20cm, H=30cm) : 1본당 29,800원 - 낮은경계석(L=100cm, B=20cm, H=15cm) : 1본당 18,500원 ○ 곡각지점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 설치하였으며 보차도 경계석은 도로 시설물이므로 설치하는 우리과에서 하였지만 도로관리 전담 부서인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음.	지역교통과
○ 고시 10년이상 경과된 미개설 도로 (44개소) 및 관내 도로중단 구배등 주변의 입지적 변화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확보차원에서도 일부 조정되어야 함에도 변경 및 폐지에 따른 민원발생을 우려 소홀히 하고 있음	○ 장기 미개설 계획도로,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망 계획으로 사업완료후 차량 통행곤란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여건, 주변지형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폐지 또는 일부구간 조정코자 95년 예산에 용역비 30,000천원을 반영하였음. ○ 추진계획 - '95. 3~ 4 : 용역업체 선정 - '95. 5~10 : 용역시행 - '95. 11 : 공람공고 - '95. 12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변경설정 및 지적승인고시	도시개발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구평동 산38번지 청우개발 등 일부 사업장의 조경복구가 현실적으로 형식화되어 적지복구 논란이 있음.	○ 토석채취사업장의 조경복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대로 조경복구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시는 수목식재 상태 등 엄격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준공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도시개발과
○ 공사중 사업주체의 부도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허가기간내 마무리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되고 또한 허가시 부한 진입도로 기부채납 등 부관명시 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다대동 113-20번지 김필태 등 5개 사업장)	○ 향후 토지형질 변경(토석채취)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신청자의 사업추진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 허가기간이 경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 촉구후 피허가자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을시 허가취소후 공사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행정대집행 실시	
○ 무단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후 사후조치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장림동 산148-3번지 김상규 등 4 개소)	○ 복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무단형질변경지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복구촉구토록 하겠음.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현재개발 및 양성화 등 대상선정작업이 되어 주민 참여도가 저조함으로 인한 추진실적 미흡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과부족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주민의 주택개발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구내 미개발 건축물 건축주에 대하여 전수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진 원인과 주택개발방법을 분석,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지구는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건 축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사업지구의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홍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홍보물을 년2회 제작, 미개량건축물 건축주를 대상으로 개별배부하여 조속히 주택 개량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94 홍보실적 － 주민간담회 1회, 홍보물제작배부 3회, 시보게재 1회, 반회보게재 2회, 신문 보도 6회	건 측 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자체 확보치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함으로써 조례제정 취지를 실효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무상 양여된 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공유지불하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발송하여 조기에 불하 신청토록 계도하여 세입증대 조치 － '95세입예산 총 163,621천원 중 전입금 81,621천원은 특별회계 설치이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전액사용 ※ '95세출 총액대비 지방채상환에 소요되는 비율-94% • '95세출예산액- 163,621천원 • '95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 153,920천원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무허가 건축물 정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있어 장비사용료는 원인자에게 징구치 않고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비용징수)에 의거 공무원(상용인부등 포함)이 공무시간 내 행정장비를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인건비, 장비사용등)은 ○ 대집행의무자(건축주)가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그 비용을 대집행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 금후 적극 비용징수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건축주가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밖에 없음.	건 축 과
○ 자전거 전용도로 강변대로에 시행중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당초부터 인도상 보도 폭과 철망, 가로수 지주목 등 복합적인 장애요인과 도로구조를 볼 때 전용도로의 연속성도 확인치 못하고 있는 등 사업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 될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시행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에 실시한 시범사업으로서 지장수목 부분은 수목보호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해 폭 약 2m로 개설하였으며 ○ 잔여구간은 '95~'96년 연차계획으로 개설하여 순환노선이 완료되면 각종 신호등 및 표지판을 연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임.	건 설 과
○ 주민숙원사업 장림2동 (구)다대로 정비공사는 사전현장답사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설치지역의 부적절로 축구시설 및 경계석 설치 시공 등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94 장림2동 포괄사업으로 공터담장 앞으로 U형 측구(45×50)L=20m를 설치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25m 연장 설치하여 전구간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었으며 ASP 덧씌우기를 시행하여 마무리정비를 하였음.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지하케이블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로 지적도근점 관리소홀에 따른 손·망실 등으로 복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있음.	○ 지적도근점 보존관리 계획수립 • 기존 손·망실도근점은 년차적으로 복구 조치 • 신규 망실도근점 방지대책 － 각종 도로굴착 및 포장공사 등 공사허가, 준공시 매설물(지적도근점)에 대한 사전협의후 허가, 준공 결정토록 함. (실무종합심의의견서활용－심의의견사항 시방서에 명시) ○ 지적도근점 보존관리 협조통보 건설과, 도시개발과, 각동 및 유관기관	지 적 과

'94行政事務監査 指摘事項 處理顛末調書

■ 건 의 사 항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중계유선 방송사의 시청료, 이전비 등의 이용 약관 내용, 부당요금 징수사례 등 위반사항 반회보 게재하고 고발 청구 설치 요망	○반회보 회보 게재 • 반회보 게재: '94. 12월 • 게재 내용: 별첨 ○불편 부당한 사례신고 센타 설치 • 설치장소: 문화 공보실(전화 200-8221) • 설 치 일: '94. 12. 26 • 접수처리담당자: 공보계 직원 1명 • 접수 처리 내용 — 월 시설사용료 부당 징수 행위 — 신규가입비 부당 징수 행위 — 이전비 부당 징수 행위 — 서비스 제공 지연 등	문화공보실
○철새감시선 활용 철새도래지 홍보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울숙도 철새 도래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철새감시선에 구민들이 승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승선시기: 매년 11월~익년 3월 ○승선인원: 1회 6명 이내(1일 2회) ○승선대상: 관내 주민 및 자생 단체 등(동사무소 추천)	
○반회보 배부방법 개선 반상회 회보는 각동에서 통·반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별 다중 집합지 또는 통행인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가두배부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시민 자율게시판, 벽보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에 게첨토록 하고 ○가두 배부대 설치 방안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 검토하여 계획수립 시행하겠음 ※반회보는 매월 30,000부 제작하여 3.5세대당 1부씩 배부함	총 무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하단동 1149-11번지 일대에 조성 한 을숙도 간이운동장이 최근 시민, 직장 단체원들의 체육공간으로 각 광을 받고 있으나 이용 주민의 불 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 점 토	○낙동강 하구둑 건설과 더불어 생성된 을숙도 간이운동장은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휴게소와 일부 지 역이 흩과 자갈로 이루어진 요철이 심한 나지상태의 운동장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놀이경기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임을 감안하여 구민의 체위 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키 위해 -15,600m²(가로 260m, 세로 60m)의 부지 에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각 2면 및 판 리초소(3평)를 설치하여 • '94. 1월부터 체육시설을 개방, 일평균 300 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을숙도 간이운동장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 운동장 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의 원 활한 협조체제하에 운동장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국토대청결 정화활동을 수 시로 전개하고 있으며 • 운동장 및 시설물을 매일 점검하여 노면 요철 및 시설물 파·훼손시 즉시 복토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비(5,000천원)를 확 보하였으며 • 또한 간이운동장을 이용하여 야간 및 취약 시간대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연습 및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 지역교통 과 및 사하경찰서 교통과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무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정수물품중 적정 배분 —정수물품중 냉장고 등 직원복지후생차원의 물품이 실·과별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금후 정수책정시 적정배분하여 형평을 유지하는 방안검토 방안	○'95 정수물품 책정시 직원복지후생 차원에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직원 규모, 업무의 특성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후 책정하여 부서별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무 과
○우리구의 모든 기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가 화재예방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을 대비하여 문서고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문서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1일 민원봉사제”를 도입하는 방안검토	1. 문서 및 문서고 관리 ○영구, 준영구 문서는 5년 보관후 정부문서 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있으며 ○문서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 본관 건물과 별도로 건립되어 있으며, 소화기 등 화재예방기기를 비치 및 출입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방시간을 오전, 오후 각 1차때씩만 허용하고 매일 일과후 절전점검 및 보안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현 문서고에는 철재 이동식 서가의 설치가 어려우므로 신청사 이전시 철재 이동식 서가를 구입 설치 하겠음. 2. 1일 민원봉사제 ○자원민원봉사제 시행 • 기간 : '94. 3. 23~5. 11 ▷ 매주 2회 실시 • 참여 : 시우회, 건축사회	시 민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분석 — 시우회 : 민원안내원과 기능중복(민원상담 및 대서) 및 인력부족 — 건축사회 : 호응도가 높음 ○ 개선시행 : 기능이 중복되는 시우회를 제외하고 건축사회는 건축과내 종합민원 상담실 내에서 근무 — 시행일 : '94. 5. 25~현재까지 계속 — 명예민원상담원 위촉 : '94. 8. 17 (건축사 15명)	시 민 과
○ 부산정신요양원 부지가 장림동 산 157-3번지 자연 녹지지역으로 시설증축이 불가하고 입소자의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입소자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 설치기준에 의하면 시설의 입지조건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 동 부산 정신요양원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로써 환자의 요양생활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인 정서함양 등 쾌적한 환경이 중요시 되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은 부적절하며 동 부대시설을 활용 환자의 치유행동에 힘쓰도록 하겠음.	사 회 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 참고사항 ○국회보건사회위원회 국정감사('94. 9. 28 송국요양원) 결과 시정 요구사항: 정신요양시설은 녹지지역 등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사 회 과
□다대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장애인 사무실이 복지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사무실 재배치를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인근 영세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	○다대사회복지관 건물2층 장애인 협회 사무실의 용도는 노인정으로 지정되어 노인정과 아파트관리 사무실을 복지관으로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지관 전체 시설 재배치는 불가합니다. ○다대사회복지관에서 '94년도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노인무료 중식 제공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50명 기준으로 시비 7,200천원, 복지관 자비 6,216천원으로 운영이 어려웠으나 '95년도에는 부산시 이웃돕기 기금으로 지원된다고 하오니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성교양교육 내실 운영 및 교육장소 주기적 조정 요망 여성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실을 기해주기 바라며, 교육장소가 주로 구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장림, 감천 등지에 주민참여가 저조하므로 개최 장소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요망	95년 5월중 여성의 집이 신축될 예정이어서 여성전용 교육 고정장소를 확보하여 여성의 교양함양 및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고정장소에 대한 교육 계획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며 특히 장림, 감천지역 등 번두리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음.	가정복지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환경오염 측정실험실에 전문인력이 없어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전의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요망 (환경오염 측정 실험실 전문인력 확보 요망)	1. 전문인력 확보 재건의(부산광역시 및 기획감사실) -환경연구사 5명(대기 2명, 수질2명, 소음 1명) 2. 인력 확보시 BOD, COD, SS 먼지 등에 대하여 처분 권한부여 건의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인력 관리 환경미화원 179명 중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감독이 6명으로 미화원간 불만사항이므로 감독을 줄이는 방안 등 개선되도록 검토 요망	○환경미화원의 작업구역, 작업분담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감독을 줄이기는 곤란함. -감독 교육 강화로 모범이 되도록 개선 조치 * 환경미화원 감독의 업무 분담 내역 -가로청소원 지역관리 지시 및 감독-4명 -선별장 관리 및 기동청소 관련 지시 및 관리-1명 -전체 미화원 인력배치 총괄지시 및 관리-1명	청 소 과
○환경미화원 교육 철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쓰레기 수거시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정신교육 실시 요망	○주1회 교육 확행 : 청소과장 주재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 -안전사고 예방→안전띠 착용 습관화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단속에 있어 긴급차량 및 부득이한 사유 등 주변상황을 고려치 않고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이의 신청 인용율 53%) 단속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향후 단속 공무원의 직무교육으로 현저 상황 대처능력을 함양시켜 좀더 객관성 있는 정확한 단속이 요망됨	주차단속원에 대하여 주1회 직무교육과 필요시 수시로 계장이 정신교육을 시켜 구민이 수긍하는 객관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노상주차장 관리 노상주차장 설치에 있어 주변의 교통흐름 등을 감안 입지의 적정 여부 등에 구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고 주변 노변 불결지 청소와 주차관리원의 불친절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은 주차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망.	○경찰서, 관할 동사무소 등의 의견 협의를 거쳐 부산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주차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시행하고 있음. ○우리구에서 노상주차장을 수시 확인하여 불결지 청소, 관리원 친절, 부당요금 징수 근절토록 주차관리공단의 감독 부서 및 관리원에게 주지시켜 이용주민 불편이 없도록 당부해 나가겠음.	
일부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에 있어 설치기준 규격(폭3.7m, 높이 10cm)을 무시하고 설치되어 도로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설치 부서가 경찰청, 도로관리부서인 지역교통과, 지역주민 등 다양함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법으로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추후 지역주민이 설치시 설치 기준에 부합되게 지도 하겠음 ○'93년도에 건설과에서 일제 조사하여 규격미달 시설을 정비한 바 있으며 과속 방지턱은 도로시설물이므로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하였음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호승산업 형질변경 사업장 진입도로 이용실태에 있어 기존 제방을 대형차량들이 이용함으로 파손에 따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우회도로 확보 방안을 검토 요망.	○호승산업은 '94. 10. 6부로 공사중지 및 '94. 12. 31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제방 이용하는 차량통행은 없으며, 현재 제방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유수지 매립공사를 위한 공사용 차량이며, ○'95. 3월경부터는 유수지 매립공사의 부대시설인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제방을 전면 통제함으로(약 6개월간) 차량통행 할 수 없으며, ○'95. 3월 이전이라도 공사재개시에는 제방이 아닌 개설된 진입도로를 이용토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도시개발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철거강약도 조종되어 주민에게 행정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초기발견 의무화에 따른 책임제 관리로 공정하게 집행하고 ○'95년도 선거동 사회분위기를 대비하여 무허가근절 종합대책수립 시행하는 방안 검토	○'95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를 위한 자치단체장 선거 등 4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로서 자칫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단속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는 바, ○유선방영 홍보, 주간생활정보지, 반상회시 등을 통해 구민에게 무허가 건축행위시 엄중한 법집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동장과 해당새마을 담당과장을 동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주 2회이상 책임순찰토록 함은 물론, 동직원별 주 3회이상 책임지역의 순찰로 건축전 무허가 건축행위를 조기에 발견토록 제도화 하고 반장 등 신고요원으로 위촉된 77명을 적극활용 사전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건축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적발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불능시는 건축주, 시공자의 고발조치,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무허가 건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고, ○철거 및 행정조치된 건축물은 계속적 감시 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축과 철거인부 7명에 대해서는 1일1회 단속요령, 철거기준, 철거시 대화요령, 언행 및 태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철거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는 한편 재발심리를 완전 해소해 나갈 계획인 바, ○종합적인 무허가 건축근절대책을 수립, 지속 시행할 계획임.	건 축 과
○국유재산 용도폐지 도로, 구거, 하천부지의 국유재산이 본래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폐도·폐구되어 일반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재무부재산으로 이관조치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	'94. 8. 20 건설 45516-3507호로 국·공유재산 직권용도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비 1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직권용도폐지 하여 재무부재산으로 이관토록 하겠음.	건 설 과
주요 건설사업에 따른 이월사업비 과다하여 향후 설계 및 보상협의 기간을 사전 충분히 고려하여 연초 일괄 조기 발주토록 조치 방안강구	○주택방문 보상협의, 영세민, 심신장애자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세대 임대아파트 입주 알선, 지역유지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하여 협의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보도정비 공사의 보완시공에 있어 우수기 지반침하 등 기초다짐에 마무리가 안되어 보도의 균열, 요철상태가 많으므로 실용성을 고려 아스콘 포장으로 전환하는 방안	○금후 보도정비공사시 현장여건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아스콘 포장 시행여부를 검토 하겠음.	건 설 과
○부동산 중개업법령 개정으로 전속 계약 제도와 중개수수료 부산시 조례 위임 사항 등이 보완 시행되어야 함에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시행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시 지적과에 건의 및 문의해 본 결과 건설 교통부에서 준칙이 내려오지 않아 조례로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2월 중에는 준칙을 받아 시·도 조례 위임사항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심의 확정될 사항이므로 자치구에서는 현재 가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전속 계약제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확정, 시행되어 지면 별도의 행정적인 뒷받침과는 관계없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지 적 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토지실정을 무시한 채 토지의 대표성, 이용상황 등 토지 이용상태의 안정성 등의 애매한 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결정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표준지 선정 협의에 따른 조사철저 및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따른 의견요청시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지가조사원 교육의 내실운영 및 수시교육 실시-업무의 전문성 제고 ○주민의견 수렴 확대 -개별지가 열람창구 설치(동 민원실) 및 우편엽서 이용 개별통지 -통, 반장을 통한 주민회람 홍보 실시 ○대주민 홍보 강화 -반회보, 유선TV, 동 앰프 등 활용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	